## 무효한 법률행위와 관련한 몇가지 리론실천적문제

한 철 룡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자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혁명실천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찾아내여 연구대상으로 삼고 깊이있게 풀어야 하며 연구성과를 혁명실천에 구현하기 위 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현재 무효한 법률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일련의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이에 대한 리론적인 해명을 주는것은 리론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무효한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리론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는 무엇보다먼저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서도 주장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실례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텔레비죤을 가까운 친구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친구가 텔레비죤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후에 친구에게 텔레비죤을 증여한 계약의 비법성이 폭로되면서 제3자가 텔레비죤을 반환하는 문제가제기된 경우를 들수 있다. 친구는 증여계약이 허위적행위로서 무효한 법률행위라는 리유로 텔레비죤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텔레비죤을 구매한 제3자는 자기가 텔레비죤을 허물없이 산 선의취득자라는것을 리유로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

실례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친구는 증여계약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사실상 무효한 법률행위제도와 선의취득제도가 충돌하는 경우 어느 제도를 적용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것을 허용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에 따로 규정된것이 없다. 그러나 무효한 법률행위제도의 설정목적을 놓고볼 때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무효주장을 인정해야 한다.

선의취득제도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허물없이 취득한 제3자에게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선의취득제도에 따라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자는 물건의 원소유권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할수 있다. 선의취득제도는 선의취득자들의 거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며 전반적거래의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만일 우의 경우 선의취득제도의 설정목적을 중시한다면 친구는 증여계약이 무효라는것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수 없으며 선의의 제3자는 텔레비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선의취득제도를 통해 보장되는 거래의 활성화나 거래의 안정이 민법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인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고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보호하는것은 거래의 활성화나 거래의 안정을 보장하는것보다 더중요하다. 사실상 민법이 무효한 법률행위로 규정한 행위들은 국가가 가장 중시하는 리익들을 침해하는 행위들로서 그러한 행위들을 허용하지 않는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법을 비롯한 모든 법들에 있어서 근본으로 된다. 이 점을 무시하고 거래의 활성화나 안정보장만을 추구하는것은 허용될수 없다. 그러므로 우와 같은 경우들에는 응당 무효한 법률행위제도를 적용하여 거래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

무효한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리론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는 다음으로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있다.

우선 국내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근거로 외국측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을 무효한 계약으로 볼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이 문제는 현재 대외민사분쟁에서 많이 제기되고있다. 공화국법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없는 외국측 당사자들은 우리측 당사자와 우리 국내법규정과 어긋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측 당사자들은 자기측은 해당 계약의 위법성에 대하여 몰랐다는 점, 조선의 법은 조선측 당사자에게만 적용할수 있을뿐 자기측에게는 적용할수 없으므로 조선의 국내법규정을 어긴데 대하여서는 우리측 당사자가 국가앞에 책임을 져야 하며 자기측은 아무런 책임도 질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자기측의 계약리익을 보호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물론 외국측의 주장대로 그들은 자기가 체결한 계약이 조선의 국내법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는것을 모를수 있다. 그러나 몰랐다고 하여 조선의 국내법규정에 저촉되는 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되고 계약리익을 보호받을수 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매개 나라에 있어서 국내법의 적용은 국가주권의 행사로서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국가의 자주적권리이다. 우리측과 거래를 하는 외국당사자도 례외로 될수 없다. 외국측을 일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해도 해당 계약이 공화국법(례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응당 공화국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외국인, 외국법 인이라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수 없다.

그러므로 외국측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 국내법규정에 저촉 되는것이면 당연히 무효한 계약으로 되며 해당한 법적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또한 대외경제계약이 위법성으로 하여 무효로 확인된 후 재산반환이 불가능하여 그 대가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확정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앞서 본바와 같이 대외경제계약이라고 해도 위법성이 있으면 당연히 무효한 계약으로 된다. 그런데 무효로 되여 원상회복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이미 수입한 상품을 다 소비한것으로 하여 그 대가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외국측은 자기의 거래가 공화국의 법에 저촉되는것을 몰랐다는것, 계약무효는 우리측에게만 효력이 있을뿐 외국당사자인 자기측에게는 효력이 없다는것, 상품의 가격이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쌍방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써 설정된 가격이라는것을 근거로 계약에서 합의된 가격으로 대금을 상환해줄것을 제기하고있다. 이 경우에는 외국측이 주장하는대로 계약에서 합의한가격에 준하여 상환금액을 확정할것이 아니라 외국측의 상품생산원가 또는 상품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상환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계약이 무효로 되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모른 외국측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법적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여기서 원상회복은 명백히 행위를 통하여 행위자가 기대했던 재산적리익을 보장해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국측이 합의하였다는 가격이 판매리윤까지 포함한 가격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만일 외국측의 주장대로 계약에서 합의한 가격에 준하여 상환금액을 확정한다면 사실상 외국측은 해당 계약이 리행되기 전의 재산상태를 회복하는것이 아니라 계약을 통하여 얻으려던 리윤취득이라는 재산적효과를 얻게 된다.

이것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계약목적의 실현을 의미하며 계약목적이 실현되였다는것

은 곧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한다. 결국 위법성을 근거로 한 계약무효는 아무런 의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합의한 가격에 준하여 상환금액을 확정하지 말아야 한다.

무효한 법률행위의 법적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 본질에 부합되게 하자면 외국측의 상 품생산원가 또는 상품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상환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원상회복은 행위수행이전의 재산상태를 회복하는것이다. 외국측에 있어서 계약체결이 전의 재산상태를 회복하자면 수출했던 상품을 되돌려받던지 아니면 그 생산원가(또는 구 입원가)를 상환받으면 된다. 이것이 이 문제해결의 가장 공정하고 합법적인 해결책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알았는가 몰랐는가 하는것을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행위자가 알았는가 몰랐는가 하는것은 몰수의 법적제재를 가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알고 행위를 한 경우에만 몰수의 제재가 가해지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서는 행위자가 알고있는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금지규범들이 공개성을 떠는것과 관련된다.

만일 국가가 일정한 행위수행을 금지시키는 금지규범을 제정하고도 그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규범을 모른것으로 하여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현상들을 피할수 없게 된다. 이것은 금지규범의 설정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따라서 금지규범은 반드시 공개되 여야 한다.

금지규범이 공개성을 띠는 조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것을 몰랐다는것은 인정될수 없다.

례외적으로 일련의 특수한 사정으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몰랐다면 그에 대하여 행위자자신이 증명해야 한다. 이때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모를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환 경이나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당 행위가 부분적으로 위법성을 떠는 경우의 법적처리문제가 제기되고있다.

이 경우의 법적처리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가지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그 하나는 위법적인 요소만 있으면 행위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가운데서 후자가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다.

해당 행위에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민법 제26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행위전체를 무효로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지 않은 부분의 안정을 파괴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법을 위반한 부분만 무효로 하고 위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유효로 인정하게 되면 위법적인 부분이 초래할 부정적영향을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한 거래의 안정도 보장할수 있게 된다. 따라서 행위의 일부만이 위법성이 있을 때에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만 무효로 하고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유효로 인정하는것이 옳다고 볼수 있다.

부분적인 무효가 성립되자면 해당 행위가 여러 부분으로 가를수 있어야 하고 법을

위반한 부분이 행위전반의 운명을 좌우하는 부분이여서는 안된다. 법을 위반한 부분이 행위전반의 운명을 좌우하는 부분인 경우에는 당연히 행위전체가 무효로 된다.

법을 위반한것이 행위전반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것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그것이 행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의하여 결정될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수도 있다.

공화국의 관련법률과 규정들을 놓고볼 때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인 무효의 효력을 부여할수 있는 경우는 행위가 서로 다른 여러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행위의 대상을 량적으로 나눌수 있는 경우, 행위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등이다.

또한 행위의 위법성이 제거된 경우의 법적처리문제가 제기되고있다.

일련의 행위들의 경우에는 비록 법을 위반하였지만 그러한 위법성이 퇴치되거나 이 러저러한 요인으로 해당 법규범의 설정목적이 실현되는 경우들이 있다.

실례로 국가가 정한 수입한도가격을 초월한 가격으로 외국기업과 불수강판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인츰 수입한도가격이 다시 정해져 합의한 가격이 수입한도가격에 저촉되지 않게 된 경우를 들수 있다. 이 실례에서 계약당사자는 원래는 국내법규정에 위반되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국내법규정의 수정으로 그러한 위법성은 퇴치되였다.

우와 같은 경우 두가지 법적처리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위법적이라는것을 리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무효의 리유인 위법성이 이미 퇴치된 조건에서 구태여 계약을 무효로 할것이 아니라 그 효력을 인정해주는것이다. 두가지 가능성중에서 후자를 택하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법규범의 설정은 결코 그 교조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다. 매 법규범은 자기의 설정목적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목적의 실현이 바로 해당 법규범을 제정한 리유이다. 만일 법규범에 저촉되지만 후에 그것이 퇴치되였거나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해당 법규범의 설정목적이 실현되였다면 구태여 법규범의 위반을 근거로 행위자체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법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계약을 무효로 인정하고 다시 체결하게 하는것은 법규범을 위반한것을 퇴치하고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것과 법적효과상에서 아무리한 차이가 없으며 해당 계약관계의 종결을 늦추는 결과만을 가져올뿐이다. 계약관계의 종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당사자들이 해당 거래에 투자했던 재산의 회수가 늦어지게 되고 투자했던 재산의 회수가 늦어지면 재투자가 그만큼 늦어진다. 이것은 거래활성화요구에 부합되지 않는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법규범을 위반하였지만 그러한 위반이 퇴치되였거나 법규범의 설정목적이 이미 실현되였다면 계약관계의 유효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것이 법규범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거래의 신속성 및 활성화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도라고 할수 있다.

실천을 보면 위법성의 제거를 근거로 행위를 유효로 할수 있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법률의 수정으로 위법성이 퇴치된 경우이다.

이것은 행위수행당시에는 행위내용이 법규범에 저촉되는것이였지만 수행후에는 법률의 수정으로 법규범에 저촉되지 않는것으로 된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본 불수강판매매가 그 실례로 된다.

계약내용의 위법성이 퇴치된 경우이다.

이것은 행위수행당시에는 행위내용가운데 법규범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후에 행위당사자가 그것을 법규범에 저촉되지 않는것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례로 불수강판매매계약체결시에 가격을 수입한도가격을 초월한 가격으로 합의하였다가 후에 가격을 수입한도가격에 부합되는 가격으로 재합의한 경우를 들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격이 법에 부합되게 변경된 조건에서 구태여 이전날의 위법적인 가격합의를 리유로 계약자체를 무효로 하는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

리행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퇴치된 경우이다.

이것은 비록 당사자의 행위가 법규범을 위반하였지만 리행행위로 하여 법규범의 준수가 이미 필요없는것으로 되고 법규범의 설정목적이 실현된 경우를 의미한다.

실례로 외화대부시《외화대부 및 외화투자규정》제15조에 어긋나게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정해진 기간안에 원금과 리자를 정확히 상환한 경우를 들수 있다.

담보는 어디까지나 원금과 리자의 정확한 상환을 위해서 필요한것이다. 따라서 담보가설정되지 않았지만 원금과 리자가 정확히 상환되였다면 외화대부시 담보설정을 요구한《외화대부 및 외화투자규정》제15조의 설정목적은 이미 달성된것으로 되며 구태여 이 조문의위반을 근거로 대부계약자체를 부정하고 무효화할 필요는 없다.《외화대부 및 외화투자규정》제15조의 설정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없이 법규범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이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것은 아무러한 의의도 없으며 오히려 순조롭게 종결된 계약관계를 파란시킬뿐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유효로 인정하는것이 효과적이다.

무효한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리론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는 다음으로 당사자들이 사전에 행위가 특정한 형식을 갖출것을 합의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법적효력문제가 제기되고있다.

무효한 법률행위와 관련한 민법 제26조에는 법이 정한 의무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았을 때 해당 행위가 무효로 된다는데 대하여서만 규정하고있고 당사자들이 사전에 행위 (계약)가 특정한 형식을 갖출것을 합의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법적효력에 대하여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약정한 의무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은 행위도 당연히 무효한 법률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당사자들간의 합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만일 당사자들이 특정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그러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을 때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합의하였다면 계약의 형식은 응당 그 합의에 따라야 한다. 즉그러한 형식을 갖추었을 때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무효한 계약으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법학자들은 리론과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제때에 주고 법리론의 발전과 립법사업, 법집행사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오늘의 경제강국건설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민법, 무효한 법률행위